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전용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927

발의연월일: 2020. 9. 16.

발 의 자:전용기·서삼석·장경태

이동주 · 이원욱 · 허 영

김수흥 · 임오경 · 최혜영

박용진 • 권칠승 • 박 정

고영인 의원(13인)

제안이유

택시는 장기적인 경기침체, 코로나19 대유행 지속 및 택시 수요공급불균형(5만대 과잉공급) 및 연료부담 등으로 경영난과 택시운전자의실질수입 감소로 이어져, 택시이용자의 대한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.

이에 국회는「조세특례제한법」상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 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2021년 12월 31까지 공급하는 부탄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 중 킬로그램당 40원을 감면함.

그러나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감면 규정의 일몰기간이 2021.12.31.부로 종료되어 지급기간을 2024.12.31.까지 3년간 연장하여 택시사업자의 경영 여건과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택시이용자의 서비스 개선도 함께 도모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부탄에 대해서는 킬로그램당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 중 킬로그램당 40원을 감면함(안 제111조의3제1항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1조의3제1항 중 "2021년 12월 31일"을 "2024년 12월 31일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1조의3(택시연료에 대한 개	제111조의3(택시연료에 대한 개
별소비세 등의 감면) ① 「여	별소비세 등의 감면) ①
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제3조제	
2항과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	
법 시행령」 제3조제2호다목	
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	
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	
사용하는 자동차에 <u>2021년 12</u>	<u>2024년 12</u>
<u>월 31일</u> 까지 공급하는 「개별	월 31일
소비세법」 제1조제2항제4호바	
목에 따른 석유가스 중 부탄	
(이하 이 조에서 "부탄"이라 한	
다)에 대해서는 킬로그램당 개	
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 중	
킬로그램당 40원을 감면한다.	
② ~ ⑩ (생 략)	② ~ ⑩ (현행과 같음)